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  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병원장
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
제 목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275호(2020.12.2.)

2. 보건복지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「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9-320호, 2020.1.1.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□ 주요 개정사항

-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
  -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
  -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
- ※ 시행일 : 2020년 12월 2일

붙임 :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안 및 전문 각 1부.

※ 붙임자료는 홈페이지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) / 협회업무 / 보험정책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---

사원 김수현 국장 류향수 본부장 김종윤

시행 : 보험 제 2020-692 ( 2020.12.04 )

우편번호 04165 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1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soohyun@kha.or.kr](mailto:soohyun@kha.or.kr)